



タイトル Title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The campaign to return a part of tuition fees for the Korean universities due to the Covid-19)
著者 Author(s)	정, 병호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刊行日 Issue date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Research Paper / 研究報告書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81012466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

The campaign to return a part of tuition fees for the Korean universities due to the Covid-19

정병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¹

1. 코로나 사태와 대학사회

2020년 Covid-19(이하 '코로나'라 한다) 사태는 한국에서도 이미 광범한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대학사회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향후 그것의 강도가 어떠할지 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올해 1학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강의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또는 원격)강의가 시행되었다. 잠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여 2학기에는 대면강의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학기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강의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등록금 반환 운동과 교육당국 및 대학의 대응

1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시작되자 학생들은 강의의 질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미 3월 1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²(이하 네트워크

1 정병호, 鄭炳浩, Jung Byoung Ho/민법/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Univ. of Seoul, Law School) 교수/ 로마법상 부당이득에 있어 재산법적 사고와 물권법적 사고,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판 등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univnet>) 자신의 소개에 따르면, "2019년 4월 6일,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라 함)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부처와 대학들을 상대로,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 학생·학교·교육부 간 소통채널 확보 이외에도 등록금 사용내역 투명 공개 및 미사용 시설유지비 등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하였다.³ 이처럼 일찍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온 데에는 예정대로 3월 초에 개학한 일부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⁴뿐만 아니라, 애당초 대학등록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점도 일조했다고 본다.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전개했다.

4.15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를 계기로 네트워크는 코로나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치이슈화하였다.⁵ 4월 6일 “지금 대학생들은 재난상황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 시국선언’을 하고, “등록금 반환, 원격 강의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등을 요구하였다. 이 4개항은 네트워크가 올해 1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시국선언의 영향인지 다음 날 교육부는 전국대학협의회인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⁶와 학생들의 주요 요구안인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이며 “교육/ 재정 / 민주 / 인권 / 대학생 생활권 등 대학생들의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하는 단체”로서 “2020년 5월 기준 21개 단위, 총 29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3 2월 27일부터의 [코로나 19 대응 대학가 대책 관련 전국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는 전국 58개 대학, 약 1만 5천 명의 응답자 84.3%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했다고 한다.

4 음성 녹음파일만을 제공하는 교수들도 있었는데, 학교에 동영상 강의 설비가 미비했거나 교수가 동영상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3월 20일 ‘4.15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도 결성되어 보다 일반적인 ‘등록금 완화’ 운동을 전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320_0016194901 참조.

6 1982년 4월 2일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재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설립되어 1984년 4월 10일 공포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 法定단체가 된 <http://www.kcue.or.kr/about/normal.php> 참조.

또한 네트워크는 정치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4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원내 교섭단체이자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외 3개 정당과 함께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등록금 반환, 원격수업 대책 마련,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였다. 총선 하루 전 날인 4월 14일에는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⁷

4월 23일에는 교육당국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교육부 차관 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 문제 가운데 원격수업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이었으나, 등록금 환불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이며, 등록금 환불은 대학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4월 24일 대교협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대교협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원격 수업 대책 마련을 대교협 차원에서도 독려할 것이며, 학생-학교-정부 차원의 3자 협의회 참여는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교육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더라도 이는 특별 장학금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교협은 교육부를 상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산집행이 곤란해진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대학들이 이를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 집행의 엄격성으로 인해,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 교육당국과 대학들로부터 등록금반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자 5월 들어 네트워크는 司法的 구제수단인 소송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아래 3. 참조).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여당은 일부 등록금 반환 -이는 학생들이 주장이고 교육당국과 대학측은 장학금 지급이라는 입장이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에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가 대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

7 총 239개 대학 21784명의 응답자 가운데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 87.4%가 '장학

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리하여 정부·여당은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마침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⁸ 이는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긴급 투입함으로써, 특별장학금 등 지급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7월 30일 1000억원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V유형) 기본계획⁹(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여건'과 '자구노력을 통한 장학금 지급'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내에서 학교 규모·지역·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재정여건'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¹⁰은 지원받지 못하고, 500억원 이상 대학부터는 100억원 단위로 10%씩 더 낮은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또 지역별, 정원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학생 수 5000명 이상 중·대규모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1.2의 가중치를 곱해 지원금을 산출하나,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지역과 관계없이 1.2의 가중치를 받는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

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반환/ 환급'을 요구했다고 한다.

8 애초 정부·여당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 있는 예산으로 2,718억원을 책정하여, 등록금 반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학생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씩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677.html?_fr=dable 참고. 최종 반영된 1,000억원은 학생 1인당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등록금 반환 소송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393&lev=0&m=02>

10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등 모두 20곳이다. 올해에는 전체 사립대 적립금이 전년보다 14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5872896&mediaCodeNo=257&OutLnkChk=Y>

참조

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10월에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대학의 자구노력에 기초한 정부 예산지원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7월 17~24일 153곳 사립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혹은 생활비를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대학은 18곳이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대학도 32곳이나 됐다. 일부 학생에게 지급한 대학도 40곳이었고, 지급할 예정인 곳도 7곳이었다. 코로나19 관련해 전체 혹은 일부 학생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인 곳은 총 97곳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국립대 29곳과 공립대인 서울시립대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적립금 상위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식의 등록금 반환을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비판이 있었고, 교육부는 적립금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성'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 영향인지 8월 25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답변에 따르면,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0곳 가운데 17곳에서도 학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¹¹

네트워크는 8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사제도 등 대학 의사결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2학기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는 어렵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

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516392021048>.

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설문조사¹²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3. 등록금 반환 소송

3월초부터 2달 가까이 대학, 정부, 정치권에 등록금 반환 및 코로나 대책을 요구했지만, 큰 성과가 없자, 학생들은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송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헌법소원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이다. 먼저 헌법소원은 3월 22일 인하대 4학년생이 제기했는데¹³,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라는 이유에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조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규칙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등록금 면제자(휴학 등)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12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008-000670>. [조사항목] 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필수]최근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반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필수]현재 대학 등록금은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교직원+학생+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반면, 면제·감액·반환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④ [필수]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필수]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보장과 사적계약관계로 인해 관여가 어렵다고 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3640.html 참조.

주장했다. 또 주요 사이버 대학들에 비해 더 질 낮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일반 대학들이 등록금은 사이버대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더 많이 납부받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논리로 3주 동안 55만93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3월 31일 9인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 헌법소원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은 네트워크가 5월 2일 제14차 정기 대표자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0 상반기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7월 1일 최종적으로 전국 46개 대학 3362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각 학교 법인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학생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의 경우 대한민국과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 인천대)를 피고로 학생 1인당 50만원씩 청구하였다. 네트워크가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반환을 요구한 등록금의 59%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을 낮추어 청구한 셈이다.

소송을 진행한 운동본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미 납부한 등록금 중 실험실습비, 시설사용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등록금과 관련한 소송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입학금,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으로 입학금과 기성회비가 폐지됨과 동시에 관련 법안 통과로 정부 국비 지원이 강화된 바와 같이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국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진행된 입학금 반환 소송을 계기로,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의 결단으로 입학금이 즉시 폐지되었고,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학생·사립대학총장협의회 3자 협의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 등에 합의하였다.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를 갖고 있던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에 대해 2014년 제기된 반환소송을 계기로 2015년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과거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 대학회계가 새로 설치되었다.¹⁴

등록금반환소송을 둘러싸고 학생과 대학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10여 개 학교에서 소송 취하를 학교 본부 차원에서 압박하는 사례가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소송 취하 압박사례는 ① 대학 당국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대응 때문에 학교에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은근히 압력을 넣는 경우 ② 전공 교수 등이 직접 학생과 면담하거나 전화를 해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③ 코로나19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 지급 과정에서 소송 참여 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학들의 강요로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은 8월 19일을 기준으로 1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네트워크는 강력 반발하여 8월 17일 기자회견, 8월 19일 권익위에 대책 마련 촉구, 8월 20일 대학생-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소송취하 강요를 둘러싼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자, 교육부 장관은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측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 표명 때문인지 등록금반환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에서 배제한다는 학교 방침을 철회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¹⁵ 8월 27일 현재 민사소송은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4. 전망

14 1심과 2심에서 국공립대학측이 패소하자(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 註 14 참조), 향후 기성회비 징수불가능으로 인한 재정적 곤란을 우려한 대학측 주도로 2015년 3월 13일 과거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에 통합할 수 있는 대학회계를 입법화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5 예컨대 경북대의 공지사항(<http://www.knu.ac.kr/wbbs/>) 내 코로나19특별장학금지급안내(정정) 참조.

먼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가 認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는 천재지변의 일종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할 채무를 진 대학이 이로 인해 실험실습비 등 대면수업과 관련한 급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 민법 제 537조¹⁶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학생들로부터 반대급부로서 청구·수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원비(교습비) 반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학원 강의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반환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미 3월 31일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해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에도 교습비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호).¹⁷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치열한 논란 끝에 상당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의 10% 내에서 반환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이라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둬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으로 귀결된 네트워크의 등록금반환운동에서 학생들은 일관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히 실험·실습 과정이 생략되고,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16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7 구 시행령 제18조에는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①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생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에는 각 학원 방침에 따라 환불 처리되었다.

등 학교 주요시설 운영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투입해야 할 등록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 대학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 준비·진행 및 학교시설 방역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있었다. 더구나 10여 년간 정부의 통제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해 대학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다.

필자는 학생측 대리인단이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임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등록금 가운데 실험실습비, 시설유지비 등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2015년 대법원은 대학이 기성회를 통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한국 민법 제741조)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¹⁸,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이 “기성회비는 전액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의 회계에 편입되어 학교시설 확충과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급 등의 교육재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들은 실험실습비 등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¹⁹, 온라인 수업 준비·진행 및 학교시설 방역 등에 새로운 비용을 지출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부한 등록금 가운데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한국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근거로 드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헌법소원과 등록금 반환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결판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대학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18 대법원 2015.06.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19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학들이 올해 1학기 실험실습예산을 상당부분 쓰지 못했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310724001&code=940100.

기다릴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다.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더라도 등록금 일부에 대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認容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한국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록-다운을 의미하는 3단계로 상향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사회가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등록금반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문제의 배후에는 대학등록금이 대다수 노동자 계층에게는 소위 '살인적'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등록금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학등록금 인하 내지 폐지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